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2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(2022. 5. 4)에서 의결된 제주특별  
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위임전결규정 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

2022년 5월 10일

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규정 제 106 호

##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위임전결규정 개정규정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의 공통사항 중 업무내용의 22번 ‘예산집행’ 부분에서 ‘100만원’을 ‘300만원’으로, ‘30만원’을 ‘100만원’으로, ‘10만원’을 ‘50만원’으로 하며 ‘100만원 미만’과 ‘50만원 미만’의 전결 권한 ‘○’ 표시 하단에 각각 (부장), (팀장)을 부기한다.

[별표]의 공통사항 중 업무내용의 24번 ‘각종일지의 기록 및 보관’ 부분에서 ‘일일업무일지’, ‘주간업무보고’의 전결 권한을 ‘사무처장’에서 ‘부서장’으로 조정함.

[별표]의 ‘2. 사무국’을 ‘2. 사무처’로 하고 경리업무의 3번 ‘지출원인행위’ 부분에서 ‘100만원’을 ‘300만원’으로, ‘30만원’을 ‘100만원’으로하고 ‘50만원 미만’을 신설하여, ‘100만원 미만’과 ‘50만원 미만’의 전결 권한 ‘○’ 표시 하단에 각각 (부장), (팀장)을 부기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